

환자기본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2. 3. 남인순의원 등 22인

나. 회부일자 : 2024. 12.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남인순 의원)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제정안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①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속에서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②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③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환자는 여전히 보건의료의 객체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환자가 투병 및 권익 증진에 있어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④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의 각종 법정 위원회에 환자단체가 참여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임.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① 제정안은 기존 「보건의료기본법」이나 「환자안전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고, ② ‘환자’라는 개념은 보건의료 분야에 관여되는 많은 부분 중 보건의

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의 일부로서, 이를 해당 정책 분야의 바탕이 되는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③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분야로 비전문가들의 정책결정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④ 막연히 환자의 권익증진 도모를 넘어 실질적으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 환자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장하고 의료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임.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방지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